



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



수신처 수신처 참조
(참 조)

제 목 경기도 정신질환자 독립주거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안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질환자 주거복지향상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바, '2019년 경기도 정신질환자 독립주거 지원사업' 신규 대상자를 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가. 사 업 명 : 2019년 경기도 정신질환자 독립주거 지원사업

나. 모집기간 : 2019.08.09.(금) ~ 2019.08.30.(금) 18:00까지

다. 대 상 자 : 경기도 내 독립생활이 가능한 회복된 정신질환자

라. 모집지역 : 고양시 (인근 지역 지원가능)

※ 자세한 입주 주택 현황은 붙임 참고

마. 지원방법 : 첨부된 서식 작성 후 이메일(gpmhc@hanmail.net) 접수

바. 지원서류 : 붙임서류 2,3,4 /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서

사. 문 의 : 회복지원팀 위지훈 031-212-0435 (내선6446)

- 붙임 1. 2019년 경기도 정신질환자 독립주거 지원사업 안내 1부
2. 독립주거 서비스 신청서 1부
3. 독립주거 서비스 의뢰서 1부
4. BPRS, GAF 각 1부. 끝.

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장



수신처 : 도 내 31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재활시설, 정신의료기관

| | | | |
|--|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위지훈 | 팀장 정미연 | 부센터장 윤미경 | 센터장 이명수 |
| 시행: 경기정신건강19-223(2019.08.02.) | | 접수: | |
| 우 1631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| | 전화: (031)212-0435 | 전송: (031)212-0442 |
| (정자동) 경기도 의료원 2층 | | (내선6446) | |
| 홈페이지 http://www.mentalhealth.or.kr | | 전자우편 gpmhc@hanmail.net | |

붙임 1.

2019년 경기도 정신질환자 독립주거 지원사업 안내

1

추진배경

-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주거복지사업 공공(국민)임대주택 이용률이 정신장애의 경우 5.1%(청각장애 8.3%, 자폐성 장애 12.3%)로 매우 낮음.
-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계획 100대 과제 중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 우선 공급하게 되어있음. 이에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주거지 마련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함.

2

사업개요

- 사업대상 : 경기도 내 독립생활이 가능한 회복된 정신질환자
- 입주지역 : 인천본부 소관 내 1개 권역 중 1개 시·군 (고양시)
* 입주지역 시군은 차후 추가로 확대될 수 있으며, 입주 주택 확보 후 추가 모집 공지 예정
- 모집기간 : 2019.08.09.(금) ~ 2019.08.30.(금) 18:00 까지
- 지원서류 : 독립주거 서비스 신청서[붙임2] * 대상자가 직접 작성
독립주거 서비스 의뢰서[붙임3],
BPRS, GAF[붙임4],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서
- 지원방법 : 첨부된 서식 작성 후 이메일(gpmhc@hanmail.net) 접수
- 지원내용
 -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지 지원
 - 대상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진행
- 문 의 : 회복지원팀 위지훈 031-212-0435 (내선6446)

3

입주 주택 현황

| 시군 | 주소 | 면적/층 | | | 옵션 | 비고 | 월임대료 |
|----|------------|------|----|----|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1 | 고양시 행신동 | 5평 | 원룸 | 1층 | 신발장 | 빌라단지, 인근 공원 | 49,580원 |

※ 월 임대료는 계약 시 변동 가능

※ 투룸 이상의 경우, 다른 대상자와 함께 거주 가능

4

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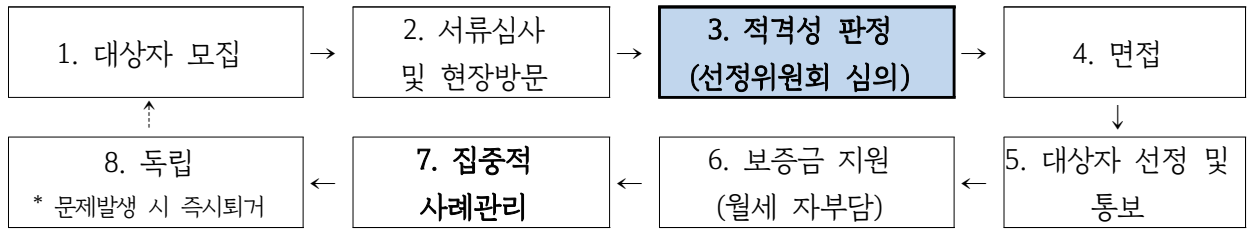
1. 대상 자격 및 입주 조건

| | |
|-------|--|
| 대상 자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경기도에 거주 중이며, 정신과 치료 유지 중인 대상자 중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자 ※ 경기도 외 거주자의 경우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②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생활이 가능한 자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 중이거나 등록 예정인 자 ④ 돌아갈 안정적 주거지 없이 시설(입소생활시설, 주거제공시설, 공동생활가정, 병원 등)에 입소 중이나 재활의 준비가 된 자 ⑤ 명확한 주거지가 없는 자(고시원, 쉼터, 보호센터 등) |
| 입주 기간 | <p>설정목표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통해 총 입주기간 결정 (입주기간 중 2년마다 재계약 진행되며, 평가에 따라 입주기간 조정 가능)</p> |
| 입주 조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지속적 사례관리 유지 ② 규칙적인 약물 복용 및 치료 유지 ③ 임대료(월세) 및 주거 관리비(전기, 수도, 난방) 자부담 ④ 화재보험 가입 |

⇒ 상기 5가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 가능

⇒ 지원시군 : 해당 독립주거지 시군이 아니어도 인근 시·군에서 지원 가능함.

2. 대상자 선정 과정



가. 대상자 모집

- 독립주거 서비스 신청서(대상자 작성) 및 의뢰서(사례관리자 작성) 제출
제출처 : Head Quarter (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)]

※ 제출 서류 - ① 독립주거 서비스 신청서[붙임2] *대상자가 직접 작성

② 독립주거 서비스 의뢰서[붙임3] ③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서

나. 입주 적합 심사 및 판정

- 의뢰된 대상자에 대해 Head Quarter기관이 1차 자격심의를 진행
-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본조건 충족 시 선정위원회*에서 적합여부를 평가함.

※ 선정 위원회

- 구 성 :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외부 전문가, 사례관리자 등
- 운영방안
 - ① 의뢰 접수 후 대상자 상담 및 기초 조사를 통해 1차 평가
 - ② 선정회의 개최하여 대상자 평가 및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

다. 주택 배정 및 입주 적응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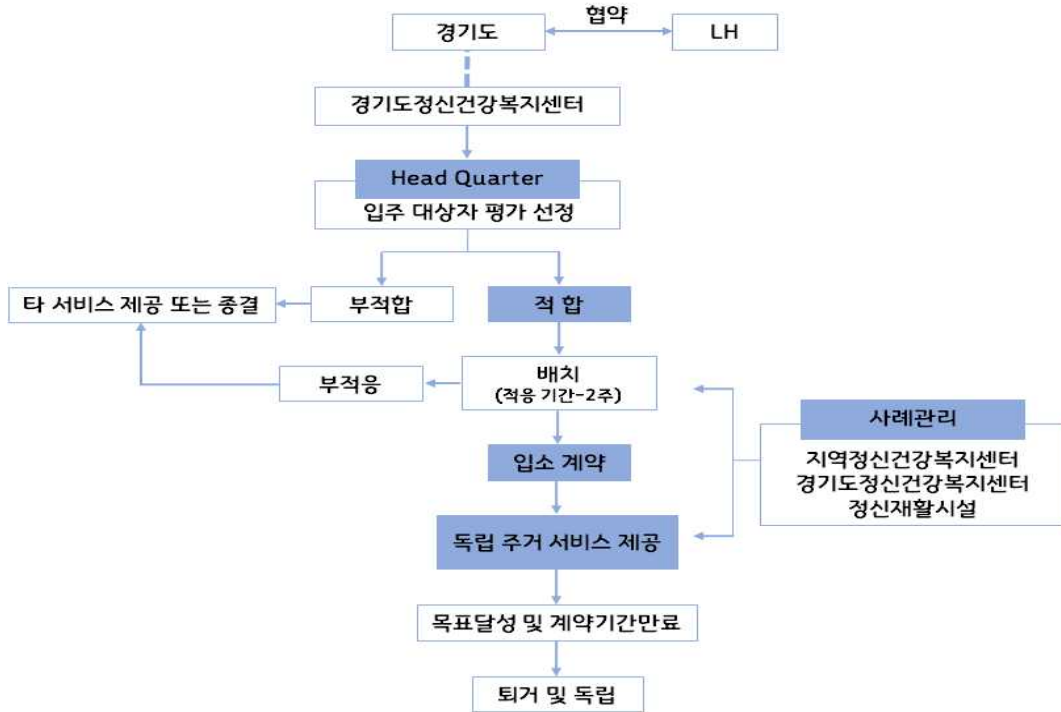
- 입주자는 배정 받은 주택에서 2주간 생활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을 가짐.

※ 입주 시, LH 권역별 시군에 따라 주민등록등본(가족관계증명서), 건강보험증(의료보호증), 수급자 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.

라. 계약 및 입주

- 최종심의 결과를 대상자 및 지역사례관리자에게 통보 후 계약서 및 동의서 작성

3. 독립 주거 지원사업 흐름도



4. 각 기관별 역할

| 기 관 | 역 할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경기도 | 주택 확보, 운영기관 선정, 정책 기획 및 예산지원 | |
| LH | 주택 공급 및 관리, 운영기관이 주거복지 사업에 필요한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 | |
| 경기도 정신건강 복지센터 | 사업 예산 운영 및 홍보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적응 기간 동안은 집중사례 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 관리 진행 (주 1회 이상 방문) -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 개입 및 실무자 회의 개최 |
| | 실적 및 주거지원 서비스 대상자 관련 서류 취합 보고 | |
| | 주거지원 사례관리 (대상자 모니터링, 주거지 및 생활상태 점검 등) | |
| 시·군 정신건강 복지센터 | 사업 결과보고서 발행 | |
| | 대상자별 자립계획 수립 및 지원 | |
| | 사전 사후 평가 / 대상자 모니터링, 전후 활동사진 및 경험수기 제출 | |
| | 입주초기 _ 집중 사례관리 입주 안정기 _ 일상생활 전반적 사례관리 | |

※ 계약 체결 이후 대상자 문제 발생 시 선정위원회를 통해 퇴거 여부가 결정되며, 퇴거 시 새로운 대상자가 입주하도록 함.

5. 주거서비스 종료

- 서비스 계약 해지 신청은 퇴거일(이사 나가는 날)보다 최소 두 달 전까지 독립주거 서비스 종료준비 계획서 및 퇴거 요청서를 제출
- 퇴거일까지 임대료가 부과되며 입주 대상자는 퇴거 전 공과금 및 관리비 정산